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9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 남인순 · 강민정 · 강선우

고영인 • 권인숙 • 김승원

김용민 · 김주영 · 맹성규

박성준 · 송재호 · 양이원영

양정숙 · 오영환 · 윤재갑

이성만・야진비・이용빈

임종성 · 정성호 · 정정순

정춘숙・주철현・최종윤

최혜영 • 허종식 • 홍성국

황우하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출생아가 있는 가구의 정보, 요양기관에서의 입원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에는 모든 신생아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청구리스트를 모집단으로활용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0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0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
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	
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
	<u>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u>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u>라야 한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